



# 집합투자기구의 소규모펀드 발생 공시 안내의 건

문 서 번 호 : 베어링자산운용-2024-0856

날 짜 : 2024-10-07

수 신 : 판매사

제 목 : 집합투자기구의 소규모펀드 발생 공시 안내의 건

1. 귀 사(행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당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소규모 펀드 공시대상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3.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설정(설립)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입니다. 동 펀드는 투자회사형태로 법 202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의해서만 해산이 가능하며, 소규모 펀드가 발생하여도 임의해산사유 적용 대상은 아니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대상펀드:

- 베어링고배당밸런스드60증권투자회사(주식혼합)Class A
- 베어링고배당밸런스드60증권투자회사(주식혼합)Class C
- 베어링고배당밸런스드60증권투자회사(주식혼합)Class C-1
- 베어링고배당밸런스드60증권투자회사(주식혼합)Class C2
- 베어링고배당밸런스드60증권투자회사(주식혼합)Class C3
- 베어링고배당밸런스드60증권투자회사(주식혼합)Class C4
- 베어링고배당밸런스드60증권투자회사(주식혼합)Class C5
- 베어링고배당밸런스드60증권투자회사(주식혼합)Class S

나. 적용대상:

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 설정(설립) 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(설정액)이 50억 미만인 공모 추가형 펀드

다. 처리방법: 수시공시(1개월)

-첨부: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대상 현황 1부. 끝.

베어링자산운용 주식회사

대표이사 박종학

